

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2나559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2나5590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5746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효정

변론 종결2024. 7. 24.

판결 선고2024. 9. 4.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57468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5. 16. 접수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실행

1) A은 'H'(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용인시 처인구 I, J동'에서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6. 27.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013. 6. 27.	387,000,000원 (2018. 6. 27.)	중소기업은행	정보통신진흥기금대출430,000,000원
--------------	-----------------------------	--------	------------------------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A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7. 1.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대출금 250,810,000원(2016. 10. 19. 기준 잔액)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원금이 225,729,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 1) A은 2016. 10. 18. 서울회생법원 2016간회단100070호(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 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간회단100070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1.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2) 이에 따라 2016. 10. 19. A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8.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226,557,9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 1)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간이조사위원 K회계법인은 2016. 12. 29. "조사기준일(2016. 11. 7.) 현재 채무자(A, 이하 같다)의 자산총계는 2,047,843,144원, 부채총계는 2,678,244,338원, 순자산은 (-)630,401,194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채무자의 계속사업가치가 1,194,245,995원으로 청산가치 1,140,488,839원보다 크고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자금으로 채무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경우 자금부족 상태에서 해소되어 현금유지능력이 있으므로 회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7. 3. 20. A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 2)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A에 대한 구상채권은 2018~2021년(제2~5차 연도)에 매년 각 3,398,368원을, 2022~2023년(제6~7차 연도)에 매년 각 6,796,737원을, 2024~2025년(제8~9차 연도)에 매년 각 13,593,474원, 2026년(제10차 연도)에 13,593,477원(이상 합계 67,967,371원)을 각 변제하되, 위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3) 서울회생법원은 2018. 6. 11. A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라. A의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에 대한 유형자산 및 지식재산권 양도

-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8. 5. 4. 방송통신 음향 및 영상기기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용인시 처인구 I'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업체의 연구소/부장으로 근무하던 E이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다.

2) A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직후인 2018.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에 이 사건 업체의 주요영업재산을 포함한 '품목명'란 기재 유형자산(이하 '이 사건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222,748,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형자산 양도'이라 한다).

1	2018-07-31	L 외(차량번호 1 생략)	74,305,000
2	2018-08-29	차량매각	1,980,000
3	2018-08-31	M 외	25,136,100
4	2018-09-28	M 외	17,270,000
5	2018-10-26	N 외	19,121,300
6	2018-11-29	N 외	17,396,500
7	2018-12-31	재고 매각	48,180,000
8	2018-12-31	비품 외 매각	19,360,000
합계	222,748,900		

3) A은 2019. 1. 18. ① E에게 별지 1 목록 1번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O로, 같은 목록 2번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P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② F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Q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③ G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R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라 한다), 2019. 1. 31. G에 '특허, 실용신안, 형식승인, 지식재산권'을 공급가액 3,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외상 공급하기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A은 2019. 5. 16. 피고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접수 D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각 마쳐주었다(이하 위 별지 4 목록 기재 각 상표권과 이 사건 특허권 및 디자인권과 통틀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5) G 2018. 7. 25.부터 2019. 5. 24.까지 A 명의 농협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6,534,660원을 송금하였다[위 2)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G가 이 사건 업체의 유형자산과 별지 3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합계 226,708,900원(= 222,748,900원 + 3,960,000원)이다].

1	2018-07-25	30,000,000	12	2018-12-24	7,396,500
2	2018-07-31	20,000,000	13	2018-12-31	10,000,000
3	2018-08-10	12,000,000	14	2019-01-10	20,000,000
4	2018-08-24	12,305,000	15	2019-01-25	11,980,000
5	2018-09-10	10,000,000	16	2019-01-31	10,000,000
6	2018-10-02	15,136,100	17	2019-03-29	5,000,000
7	2018-10-25	10,000,000	18	2019-04-10	5,000,000
8	2018-10-31	7,270,000	19	2019-04-25	4,000,000
9	2018-11-09	9,121,300	20	2019-05-10	1,000,000
10	2018-11-23	10,000,000	21	2019-05-24	6,325,760
11	2018-12-10	10,000,000	합계	226,534,660	

6) A은 2019. 6. 30.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다.

마.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소송절차의 수계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12.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각 권리이전계약의 취소 및 위 각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1. 25.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A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2. 8. 25. 수원회생법원 2022하단10502호(2023. 3. 1. 수원회생법원 개원 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하단1050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2023. 1. 26. 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고, 2023. 5. 22.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6~9호증, 18~23호증, 을 제 3, 5,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상표권 양도에 대한 부인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 을 12,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제출명령에 대한 용인세무서장의 2023. 9. 25. 자 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 A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유형자산 및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도 경위 가) A은 2017. 3. 20. 회생계획인가 결정 무렵,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회생계획을 통해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부채 합계 2,675,587,851원 중 면책되지 않은 채무는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 수익으로 2026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A이 이러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 2018. 6. 11. A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A의 자산매각에 대한 법원의 감독이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이미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직전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였으므로(위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는 서울회생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은 회생절차종결 당시 이 사건 유형자산과 이 사건 지식재산권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리고 A은 그 직후인 2018.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G에 합계 222,748,900원 상당의 이 사건 유형자산을 매각하였고, 2019. 1. 18.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2019. 5. 16. 피고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각 상표권을 각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지적재산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2) A의 이 사건 업체 운영 중단 및 G 영업개시 경위 가) 이 사건 업체가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2018. 6.분 102건 가량, 2018. 7.분 73건 가량이나, 이 사건 유형자산 양도가 시작된 이후인 2018. 8. 1.부터 2018. 12. 말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하여 발행된 것을 제외하면 2018. 8.분 1건, 2019. 9.분 1건에 불과하다(을 9호증). 즉, A은 이 사건 유형자산의 매각을 시작한 직후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완전히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G는 2018. 5. 4. 설립된 신설회사임에도 2018. 7.경부터 활발한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이 사건 업체의 2018. 6.부터 2018. 7.까지 매출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처들과 G의 2018. 7.부터 2018. 12.까지 매출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처들은 비교하면 그 중 45개의 거래처2)가 일치하고, 특히 '(주)S'(2018. 6. 4. 18,480,000원 상당의 스피커구매), 'T'(2018. 6. 29. 10,884,100원 상당의 물품구매), 'U'(2018. 6. 29. 10,431,600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포함한 이 사건 업체의 우량거래처들3)은 2018. 6. 29.(그중 V는 2018. 7. 25.)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업체와의 거래를 일제히 중단하고 2018. 7.경부터 G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유형자산 및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경위, 위 양도 무렵 G와 이 사건 업체의

매출거래내역에 더하여 ① G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업체의 부장 E이고, 그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업체의 동일점(이 사건 업체의 대표이별점(인목동점) 제2상가 제1상가)인 화남동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이후 갱신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상표권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2. 6. 18. 존속기간만으로 소멸하였는데, G의 대표이사 E은 CN일자 특허청에 위 상표(이 사건 위 상표를 양도한 당사(이 사건)의 유산) 이 사건 업체의 기존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계속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이 2015. 5. 1. 등록결정을 받은 이 사건 상표권의 표장에는 영문자 'BM'가 포함되어 있어 G의 상호 자체가 A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G는 2018. 7.~8.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업체의 이 사건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체의 기존 거래처, 신용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영업을 일체로 양도받았고, 2019. 1.경부터 2019. 5.경에 걸쳐 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3) A의 영업 양도 대금 소비 내역 가) A의 이 사건 업체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서(갑 23호증)에 의하면, 2018. 8. 이후 매월 4,000,000원인 A의 급여를 포함한 직원급여, 식대, 건강보험료, 사무실비 명목의 비용 및 항공권, 승차권 구입비, 식사 및 음료비, 주유비, 통신요금, 병원비, 약국비, 재산세, 현금 등 명목으로 금전이 이체되거나 인출되었고, 2019. 1. 10.부터 급여 명목의 이체는 중단되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해 7.경까지 매월 4,000,000원에서 5,800,000원의 현금 또는 이체 건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식비, 치과치료비, 약국, 음료,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인출되었는바, 이러한 비용들은 A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의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다.

나) A은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유형자산과 이 사건 업체의 기존 거래처, 신용 등 일체의 영업에 대한 양도를 마쳤고, 곧바로 2019. 1. 18. 영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고, 총채권자들의 공동재산이 되어야 하는 이 사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3,960,000원에 양도하였다[G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에 대하여만 이전등록을 마치는 하였으나, 2019. 1. 31. A을 공급하는 자,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특허, 실용신안, 형식승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합계 3,96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갑 22호증)가 발행된 점을 고려하면, G가 그 이전등록 명의자와 상관없이 이 사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전체의 매각대금으로

3,9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A은 2019. 5. 16. 별지 4 목록 기재 각 상표권도 피고에게 제대로 된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6. 30. 폐업하였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A이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중단한 뒤, 그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도 수개월이 지나 행한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가 A의 이 사건 업체의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라거나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이 사건 업체의 영업활동을 통해 매년 2,000만 ~ 4,000만원 이상의 가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을 3호증 85면), 이 사건 유형자산 및 이 사건 상표권을 포함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완전히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가 회생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는 A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 사건 유형자산 및 지식재산권 양도 대가로 유입된 자금을 모두 회생채권 변제 및 임금 지급에 사용하여 유해성 및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은 이 사건 유형자산 및 지식재산권 매각의 대가로 유입된 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중 변제한 금액은 2018. 12. 28.

3,398,368원 및 2019. 4. 19. 18,767원 합계 3,417,135원에 불과하다(갑 21호증). A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 이후에는 원고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금융기관 대여금, 구상금 등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파산채권자로 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총채권자들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간이조사위원인 K회계법인이 작성한 2016. 12. 29. 자 조사보고서(을 3호증)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등으로 전액 회수가치가 없는 것으로 실사가치를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이 사건 업체 및 G가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상표권의 표장은 이탤릭체 영문자 "BN"아래에 영문 'BM'가 기재된 형태(갑 16호증의 13)로

호칭이 G의 상호와 같으므로 위 회사의 영업에 활용될 가치가 높고, 그 상표 자체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전문가, 직업적인, 프로의'를 의미하는 영문 'BO'의 준말로 인식되는 "BP"와 음향을 의미하는 "BQ"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통신 음향 및 영상기기의 제품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 당시 존속기간 만료일(2025. 5. 29.)도 상당기간 남아 있었던 점, ③ A이 2019. 1. 31. 별지 3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G에 공급가액을 396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점, ④ 만약 이 사건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면 피고가 이를 양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권은 피고에게 양도될 당시 G나 그와 유사한 방송통신 음향 및 영상기기 업체의 영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이 사건 업체와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장소에 설립되었고, G의 대표이사 E은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체의 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피고가 양수한 이 사건 상표권은 그 표장에 영문 "BM"를 포함하고 있어 피고는 위 G를 위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양도를 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양수 경위나 양수 목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A이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표권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파산재단을 위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피고가 A으로부터 양수한 위 권리에 대하여 전부이전등록의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5. 16. 접수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각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별지 4 목록 제2항 기재 상표권은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2. 6. 1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상표권에 대한 부인등록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5.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를 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부인등록절차 이행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김순한

판사조정민

판사조현준

별지

1) 소장, 항소장 및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 각 "2019. 1. 18."은 각 "2019. 5. 16."의 오키임이 명백하다(갑 제9호증의 1, 2 참조).

2) W(주), X, Y, (주)Z, AA(주), (주)S, AB 주식회사, AC, (주)AD, AE(주), 육군훈련소, AF, AG,

(주)AH, AI, (주)AJ, V, AK, (주)AL, AM, (주)AN, AO, AP, AQ, AR, AS, AT, AU, AV(주),
(주)AW, T, U, AX, AY, AZ, BA, (주)BB, BC, BD, (주)BE, BF, (주)BG, BH, (주)BI, BJ(주) 이상 45개
업체.

3) (주)S, V, AK, AM, (주)AN, AQ, AS, AT, AU, AV, T, AX, AY, AZ 등 2018. 6. 및 7.경 이 사건
업체로부터 합계 1,199,000원~18,480,000원의 재화를 구입한 업체들을 의미한다.